

## 제 11 장 경 쟁

### 제 11.1 조 목 적

이 장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을 증진시키기 위한 협력을 통하여 무역자유화의 이익 보호에 기여하고 경쟁법 집행에 관한 양 당사국의 협력 및 조정을 강화하는 것이다.

### 제 11.2 조 정 의

이 장의 목적상,

경쟁법이란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대한민국에 대해서는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(2008. 2. 29. 법률 제8863호),
- 나. 인도에 대해서는, 경쟁법(2002), 그리고
- 다.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가호 및 나호의 법률에서 개정되는 사항, 그리고

경쟁당국이란 다음을 의미한다.

- 가. 대한민국에 대해서는, “공정거래위원회”, 그리고
- 나. 인도에 대해서는, “인도 경쟁위원회” 및 “경쟁상소법원”

### 제 11.3 조 협 의

어느 한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,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간의 무역 또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반경쟁적 관행을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거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협의를 개시할 수 있다.

### 제 11.4 조

## 협    력

1.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위한 양 당사국간의 협력 및 각 경쟁당국간 협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2. 인도의 경쟁법이 완전히 발효된 이후, 양 당사국과 각 경쟁당국간 협의는 적절한 경우 역량배양·정보교환·통보절차 및 예상의 원칙을 포함하여 경쟁과 관련된 다양한 사안에 관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.

## 제 11.5 조 분쟁해결조항의 비적용

제14장(분쟁해결)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이나 분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